

부천시어린이교통나라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보고

가. 제안일자 : 2002. 1. 10

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2. 1. 11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93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(2002. 1. 18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교통행정과장 배효원)

제안이유

○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에 관한 조기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함

주요골자

- 어린이교통나라가 갖추어야 할 시설물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4조)
- 교통나라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활용사항을 정함(안 제6조)
- 시설물의 유지·관리를 위하여 관람료 징수사항을 정함(안 제8조 내지 제10조)
- 교통나라 운영에 따른 관람료 등 세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1조)

기타 참고사항

- 「부천시어린이교통나라」관리·위탁방침 기 결정(시설관리공단)
 - 위탁사업비 140,000천원 2002년 예산에 반영
- 관람료 징수에 대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필 : 조건부 가결
 - 조건내용 조례안에 반영
- 부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필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없 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 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시어린이교통나라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| 제558호 |
| 의결년월일 | 2002. 1. 19 (제93회) |

제출년월일 : 2002. 1. 10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제안이유

-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에 관한 조기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함

주요골자

- 어린이교통나라가 갖추어야 할 시설물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4조)
- 교통나라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활용사항을 정함(안 제6조)
- 시설물의 유지·관리를 위하여 관람료 징수사항을 정함(안 제8조 내지 제10조)
- 교통나라 운영에 따른 관람료 등 세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1조)

기타 참고사항

- 「부천시어린이교통나라」관리·위탁방침 기 결정(시설관리공단)
 - 위탁사업비 140,000천원 2002년 예산에 반영
- 관람료 징수에 대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필 : 조건부 가결
 - 조건내용 조례안에 반영
- 부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필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어린이교통나라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부천시어린이교통나라(이하 "교통나라"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교통나라는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15번지로 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교통나라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시설) 교통나라에는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흥미롭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설치한다.

1. 전시관, 영상관, 멀티미디어실 등 실내교육관
2. 모터카, 파고라, 교통교육장, 교통신호시설 등 실외교육시설
3. 관리사무실, 창고, 기타

제5조(휴관일) 시장은 시설의 유지·관리 및 보수 등을 위하여 정기 또는 임시 휴관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6조(자원봉사자) 교통나라의 원만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,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위탁관리) 시장은 교통나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다.

제8조(관람료) 시설물의 유지·관리·운영 및 원만한 교육진행을 위하여 관람료를 징수하며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.

제9조(관람거부 또는 퇴장명령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관람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관람거절이나 퇴장의 경우에는 기 납부한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전염성 질환자
2. 정신이상자 또는 술에 취한 자
3.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자
4.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
5. 기타 관람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자

제10조(관람료의 면제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
2. 국군의날에는 군인, 경찰의날에는 경찰,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
3.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

제11조(세입) 교통나라 운영에 따른 관람료, 기타 수입금은 부천시 세입으로 한다.

제12조(권리의 양도 금지) 교통나라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·인도하거나 전도하지 못한다. 다만,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3조(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교통나라 관람료(제8조 관련)

(단위 : 원)

| 구 분 | 개 인 | 단 체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|
| 0~3세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| 무료 | 무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단체요금은 20인시 적용한다. • 유아원, 유치원의 경우 10인 이상이라도 단체 인솔일 경우에는 단체 요금을 적용한다. |
| 4~12세 어린이 | 500 | 400 | |
| 중·고생 | 1,000 | 600 | |
| 성 인 | 1,500 | 1,000 | |